



교육부

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

2020. 5.

교 육 부

(고등교육정책관)

I. 추진 배경

□ 사업 목적

- 강사법 시행('19.8.1.) 등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학문생태계 보호·육성
-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 충족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
※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 : ('17) 34.4% → ('18) 42.8% → ('19) 43.4%
(출처 : KEDI, 평생교육통계)

□ 추진 경과

- 「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」, 법령(강사법) 및 제도 개선안 마련('18.8.)
- 강사 등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필요성 제시
- 대학·강사대표·교육부 공동, 「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*」 발표('19.6.)
* (주요내용)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지표 반영,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, 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 교육·연구 안전망 마련 등
- 개정 「고등교육법(강사법)」 시행('19.8.)
- 사업 위탁기관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지정('20.1.)
- 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('20.1.~'20.2.)

《 사전 의견수렴 주요 내용 》

- (조사 대상) 전국대학(사이버대학 제외), 유관기관(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)
 - (주요 내용) 42개 대학 사업 참여 희망, 사업 참여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(강사 채용 및 강좌 운영 기준, 대학 매칭 금액 상한 등)
-

II. 2020년 사업 추진 계획

□ 사업 개요

- 사업내용 :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도록 강사 인건비 지원
- 사업 수행기관 :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출연)
 - ※ (사업 출연기간) '20년 3월 ~ '21년 9월
- 사업 예산 : 4,912백만원
 - (대학지원비) 4,800백만원 (강사 인건비 : 강사 강의료 및 고용·산재보험)
 - ※ 지원대상교는 국고 지원금액과 동일 금액 이상 매칭하여 지원 단, 본 사업을 통한 개설 강좌의 수강료 수익으로 매칭 가능
 - (사업관리·운영비) 112백만원
- 사업 운영기간 : '20년 9월 ~ '21년 8월(1년)
 - ※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라 '20년 2학기·'21년 1학기 외 계절학기 강좌 개설 가능
- 지원 규모 : 총 40개교 내외 선정
 - ※ 지역별·학제(일반대·전문대)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대학 선정
- 지원 대상
 - (대학) 부설 평생교육원(「평생교육법」 제30조·제33조 근거)을 운영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 일반대(196개, 교육대 포함) 및 전문대(136개)
 - ※ 단, 진단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및 부정·비리 대학은 지원 제한
 - (강사) 강사법 시행('19.8.1.)으로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 또는 최종 학위(석사 또는 박사) 취득 후 7년 이내의 신진연구자 등

□ 주요 평가지표

◆ 신청대학의 ① 평생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계획과 ②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을 평가함

① 평생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 계획

- 강의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활용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발 및 운영 계획
 - 기존 평생교육원 강사의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신규 개설강좌 또는 기 운영 강좌의 신규 분반에 한하여 지원
 -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(총 정원 내 신규 분반) 개설 허용
 -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경우 한 학기당 총 45시간 내외, 일반과정의 경우 한 학기당 총 30시간 내외 운영되는 강좌 지원
 - ※ 필요시 “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(안), '20.3.(교육부-대학학사제도과)”의 원격수업 이수 시간 및 수업 시간 등을 준용하여 온라인 강좌 개설 가능
 - 강사 고용취약 계열(인문사회·예체능) 강좌 포함,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등 설계 시 우대

《 참고 : 개설 가능 강좌 》

인문학	서양사의 아웃사이더, 영화와 문학, 행복에 대한 고찰
어학	비즈니스 일어와 일본기업문화, 중국 뉴스 청취와 읽기
아동·청소년	아동 영어쓰기 코칭법, 게임기획 및 시나리오
취미·실용	가구·생활용품 디자인, 화훼장식과 공간연출
예체능	체형관리,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이해, 움직임과 소통 -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
지역연계	디지털융합시대의 지역스포츠 체험, 스토리활용과 지역브랜드 창업 오디세이

②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

○ 강사 모집 계획

- 필수 모집요건을 기반으로 평생교육원별 수요에 따른 모집 요건 설정

《 필수 모집요건 》

대 상 (① 또는 ②)	요 건				
① 강의기회 상실 강사	<p>최근 5년 내('15년~'19년) 대학 정규 강의 경력*이 있으나, 모집일 기준 대학 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강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순위</td> <td>'18.11.29. 이후 강의기회 상실 강사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순위</td> <td>'18.11.29. 전 강의기회 상실 강사</td> </tr> </table> <p>* (강의 경력) 대학 부설 기관(어학원·평생교육원 등)에서의 강의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나,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의 강의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인정</p>	1순위	'18.11.29. 이후 강의기회 상실 강사	2순위	'18.11.29. 전 강의기회 상실 강사
1순위	'18.11.29. 이후 강의기회 상실 강사				
2순위	'18.11.29. 전 강의기회 상실 강사				
② 신진연구자	<p>최종학위(석사 또는 박사) 취득 후 7년 이내의 연구자 중 ①에 해당되지 않는 학문후속세대</p>				

※ 필수 모집요건을 충족하는 강사 모집이 곤란한 경우, 모집일 기준 대학 정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직 강사 중 '18.11.29.이후 강의 담당시수가 감소하거나 모집일 기준 주당 강의 시수가 3시수 이하인 강사까지 모집 검토

※ 공고 이후 필수 모집요건 변경 필요 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완 추진

- 연구비 소득* 및 단기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
 - * (예시) 강의기회 상실 강사 대상 연구 안전망 사업('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)을 통한 연구비 수혜자도 동 사업의 강사로 지원 가능
-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 제한
- 대학 선정 이후 필수 모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 임용 확인시, 소명을 거쳐 강사 교체 또는 해당 강좌에 대한 지원 배제 검토

○ **강사 지원 계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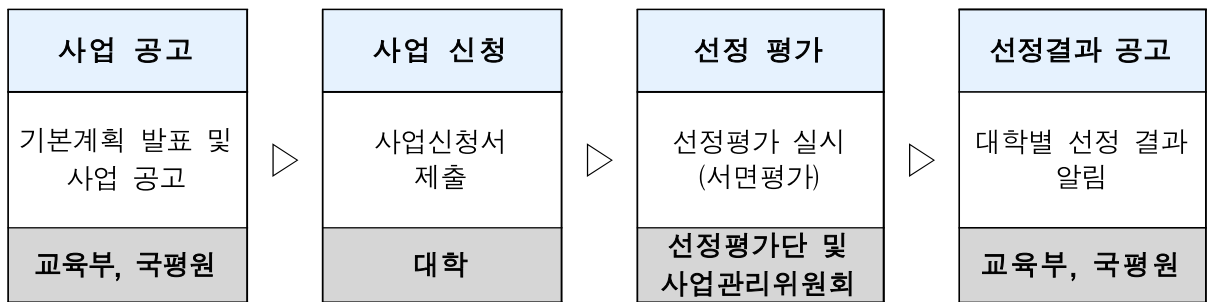
- (강의료) 실 지급 강의료는 평생교육원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
 ※ 과목·수강대상별 강의료 차등 및 강의 수강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가능
- (강의 기회) 강사 1인당 강의 담당시간은 주 6시간 이하로 권장,
 단,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 9시간까지 가능
 ※ 실습 수업의 경우 주 8시간 이하로 권장(특별히 필요한 경우 12시간까지 가능)
 ※ 강의 담당시간 제한은 임명권자가 동일한 ‘대학’ 기준

< 강사 지원 계획 관련 고려사항 >

- 대학별 국고 지원금액은 “(‘19년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(61,266원) x 동 사업을 통해 개설되는 과목의 총 시간) + (고용·산재보험료) x 50%”
- 지원대상교는 동 사업을 통한 개설 강좌의 수강료 수익 등을 활용하여 국고 지원금액과 동일 금액 이상 매칭하여야 함

□ **선정평가**

○ **선정평가 절차**



○ **선정평가단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**

- 평생교육 분야, 고등교육 분야, 유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 평가단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
- 선정평가단의 선정평가 이후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대학별 지원 금액 최종 결정

○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

- 선정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되, 지역별 강사 고용 확대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정지역 안배를 전반적으로 고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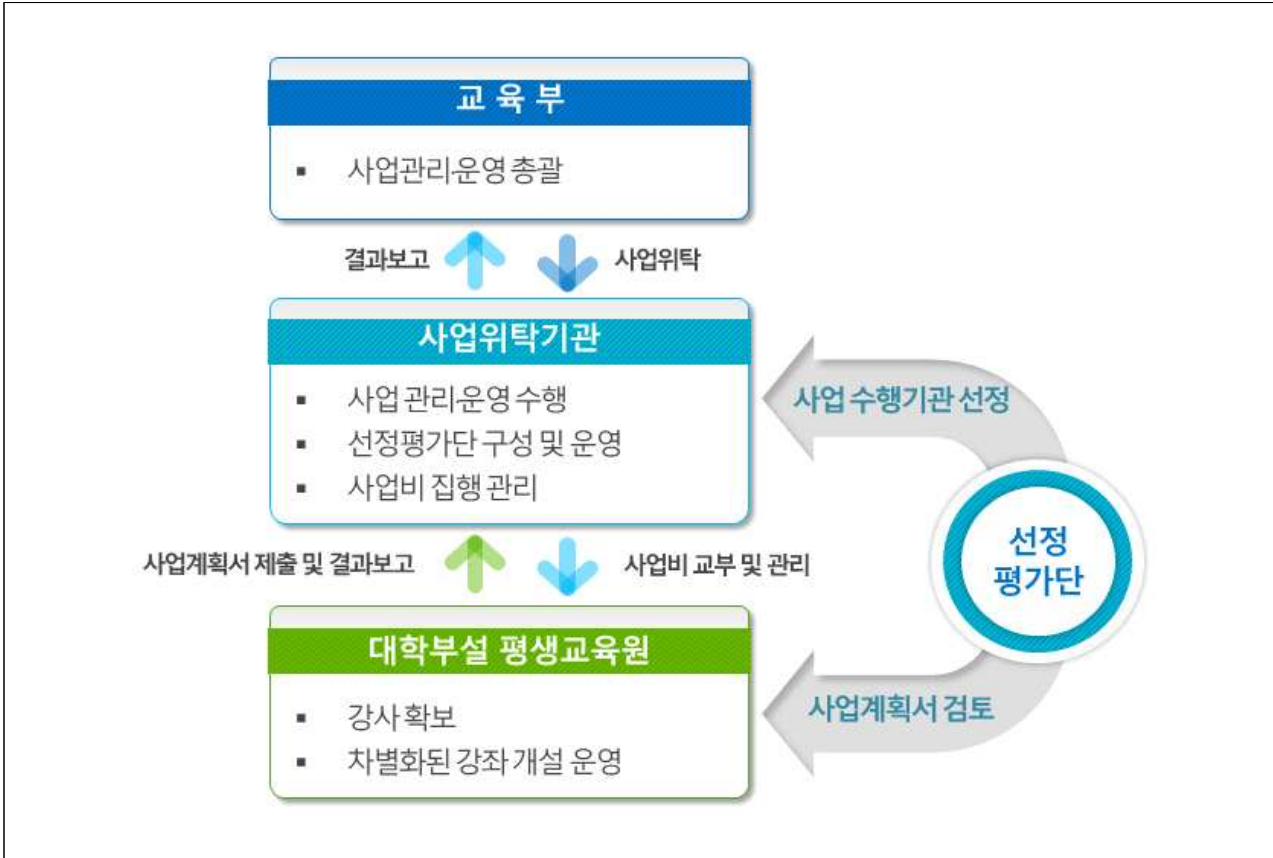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
대학 강사 고용안정성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강사 고용안정 지표(전체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강의담당학점 비율) · '16~'18학년 매학기 대비 '19.2학기~'20.1학기 	30
평생교육 강좌 개발 및 운영계획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좌 개발·운영 계획의 적절성, 기존 운영 강좌와의 차별성 및 참신성 	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취약 계열 강좌·지역 주민 대상 지역사회 연계 등 우대 강좌 포함 여부 	1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의 적극성 및 사업의 기대효과 	10
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계획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생교육원 강사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정성 	2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정지원계획의 적정성 	10
계		100

□ 고려사항

- 사업 신청대학 미달 시 사업 참여 조건 등을 완화하여 재공모 추진

Ⅲ. 사업 운영 및 관리

□ 사업 추진체계



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교부 등 사업관리·운영 총괄
- (사업위탁기관)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위탁기관으로서 사업의 관리·운영 수행
 - ※ 주요 사항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
 - 사업 시행계획 수립, 선정평가단 및 사업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, 지원대학 선정 등
 -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,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 시행
- (대학평생교육원) 강사 모집 및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·운영
 - 대학 인력 풀을 활용한 강의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 확보
 -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대학 평생교육 강좌 개설·운영

□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

- (기본방향) 강의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임용하여 운영하는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의 인건비에 한해 집행
 - 사업 수행기관이 국고 지원금과 동일금액을 매칭
- (집행 기준) 기관 자체의 강사료 지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지급
 - ※ 강사료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은 각 기관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확인
- (예산 편성)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
- (사업비 환수)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, 법령* 위반, 입시 비리, 횡령 등 대학의 부정·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삭감,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
 - * 「고등교육법」, 「공교육정상화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국립대학회계법」 등
 - 지원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이 있는 경우,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

□ 운영 및 성과관리 등

- (자체평가) 사업 계획의 달성도 등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,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계획 수립 및 실시 유도
 - ※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 및 환류 실적은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
- (현장점검) 대학의 사업 이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
- (성과평가)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, 사업관리·운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
- (사업 계획 변경) 강사 변경 및 강좌 운영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승인 요청 후 변경하여 사업 추진
- (예산집행 모니터링) 대학별 예산집행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일정 등 관리·지원

□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

- 국고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'21년 8월 말까지 집행
- 지원액의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는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
- 대학은 사업 종료 시점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

IV. 향후 일정

구분	기관	일정
사업 기본계획(안) 수립	교육부	'20년 5월
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 공고	교육부·국평원	'20년 5월
대학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 접수	국평원·대학	'20년 5월
선정평가	국평원	'20년 6월
평가결과 발표 및 대학별 운영 준비	국평원·대학	'20년 7월~8월
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착수	국평원·대학	'20년 9월 ~ '21년 8월
사업비 정산	국평원·대학	'21년 8월 ~ '21년 9월

※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